

2019 경기도

# 규제합리화 사례집

## 공공행정



# 1 PART

01. 학교 건립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켜다.....	08
02.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정 범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도모.....	10
03.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 개선.....	11
04. 자동차 복합매매단지 불합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12
05. 불필요한 민원서류 다이어트로 도민불편 해소.....	14

# 01

## 학교 건립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켜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조항 규제 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031-345-2252

### 개선배경



- 도시개발사업 관련 학교시설은 교육청과 도시개발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
  - 학교시설 설치는 교육청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 조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기도에서는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학교 설치와 개발 사업이 지연됨
- ※ **관련규정**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개선내용



#### 개선전

-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면제 권한이 경기도에 있어 학교시설 기부채납 불가



#### 개선후

-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시개발 사업 정상 추진 및 학교시설 확충

- 의왕시에서 경기도에 건의하여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내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면제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변경('18.1)

## 개선효과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진행  
※ 2018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152개(국토교통 통계기준)
- 부담금의 부과부터 징수 및 면제 업무를 일원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완공 기간을 단축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지원 없이 학교시설을 적기에 확충  
※ 5,65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2018년 경기도 사업을 의왕시 규모로 추정)



# 02

##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정 범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도모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031-8008-4105

### 개선배경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문형 이용 광고물은 유리벽의 안쪽에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의 용이성 등으로 유리벽 바깥쪽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 규정위반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

####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20조(그 밖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개선내용



- 유리벽이 바깥쪽에 붙이는 광고물을 벽면이용광고물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개선전

- 유리벽 안고 밖의 광고물 기준이 복잡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법설치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



#### 개선후

- 유리벽 외벽 부착광고물 설치개수 완화하도록 시·도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 마련

### 개선효과



- 전국 상가건물(약 3만개소) 유리벽 외벽 합법 광고 가능
  - 시·도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 마련 및 통보('20년 상반기)

# 03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 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031-8008-4105

## 개선배경



- 현재 임대사업자는 2개의 행정기관(지자체/세무서)에 각각 말소 신청해야 하므로 한 곳에만 말소한 경우 등록면허세(1만~4만원)를 부과 받아 민원 지속 발생
  - 해당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소득세법)를 받아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 개선내용



- 임대사업자 말소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등 마련
  -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기 반영되어 있으나, 말소시에서 미반영

### 개선전

- 임대사업자 말소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신청



### 개선후

- 지자체에서 일괄 접수하여 세무서로 이송·처리하도록 시스템 마련
- 국세청과 협의하여 온라인(렌트홈\*)에서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비('20년)

※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 렌트홈([www.renthome.go.kr](http://www.renthome.go.kr))

## 개선효과



- 전국 임대사업자(41만명) 말소시 행정편의 제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년 까지) 및 국세청과의 협의 후 시스템(렌트홈) 개선

# 04

## 자동차 복합매매단지 불합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031-8008-4105

### 개선배경



- 노천형 난립 중고차매매상사가 빌딩형 복합매매단지로 조성되는 추세, 사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부담금 부과 방식 유지
- 단순 주차기능으로 오수발생이 없는 자동차 전시공간을 부과면적에 포함
  - 부담금 산정 : 기준 오수발생량(15ℓ) × 단위단가(원/톤) × 연면적(㎡)(연면적 70%이상)
- 불합리한 산정 방식에 따른 부과금 과다 부과로 기업 피해 발생
  - 실제 상수사용량보다 환경부 기준 오수발생량 최대 67배 많이 발생

### 개선내용



- 자동차매매단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오수 미발생 면적 제외'개선  
 ※ 환경부 고시 제2019-215호 개정(11.25일)

#### 개선전

➤ 빌딩형 자동차매매단지의 자동차 전시공간은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면적에 포함하여 막대한 부담금이 부과



#### 개선후

➤ 전시공간을 오수량 산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개선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 일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2019. 7.18 : 빌딩형 자동차매매장 규제 접수
- 2019. 8.12 : 도 주관, 관계기관 합동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 실시
  - 관계부서(규제개혁담당관, 상하수과) 현지실사, 규제개선 방안 논의
- 2019. 8.12 : 기 운영중인 빌딩형 자동차매매장 운영실태 현장 조사
  - 전시공간, 근생시설 등 시설조사, 용인시 부담금 면제사례 및 개선방안 검토
- 2019. 8.28 :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방문 설명 및 환경부 고시 개정 건의
- 2019.10. 8 : 환경부(생활하수과) 방문 및 고시개정 건의
- 2019.10.17 : 환경부 '오수량 산정기준 자문회의' 전문가 개선 필요성 설명

- 2019.10.25 : 빌딩형 자동차매매장 추가 피해기업 현장 조사
- 2019.11. 5 : 환경부 의견조회에 따른, 道 소관부서(상하수과) 방문 협의
- 2019.11.25 : 환경부 고시 개정



- 불합리한 기업부담 해소 및 자동차매매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건물 내 주차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전시공간(부담금 산정시 포함)



피해기업 현지조사 및 규제개선 간담회



# 05

## 불필요한 민원서류 다이어트로 도민불편 해소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031-8008-4125

### 개선배경



-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을 규제개혁 추진
- 인·허가, 입찰·계약, 신청 등 민원사무 처리에 불필요한 서류를 발굴하여 감축 또는 업무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도민 불편 해소
  - 관행적 서류 요구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전산망 확인, 불편한 민원절차 개선 등

### 개선내용



- 자체감축 사례

#### 1 경기도 입찰·계약

##### 개선전

-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 ① 건설업등록증
  - ②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③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 ④ 폐기물처리업허가증
  - ⑤ 전기공사업등록증
  - ⑥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⑦ 소방시설업등록증
  - ⑧ 사회적기업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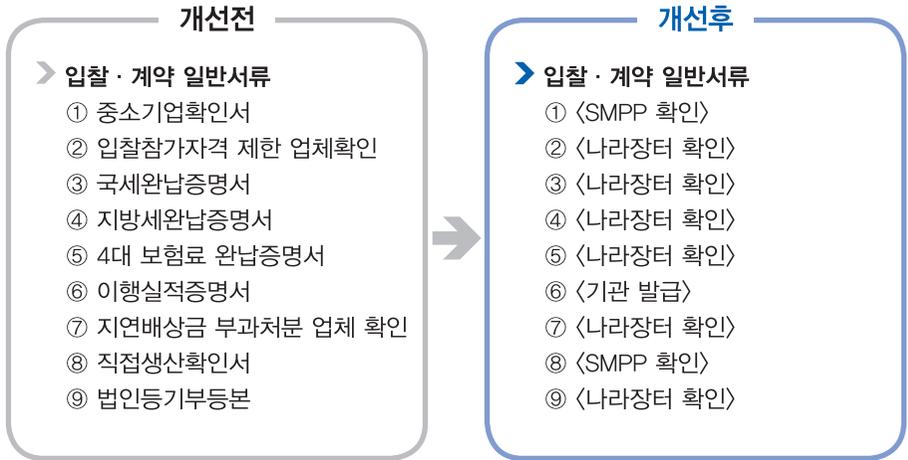


##### 개선후

-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⑥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⑦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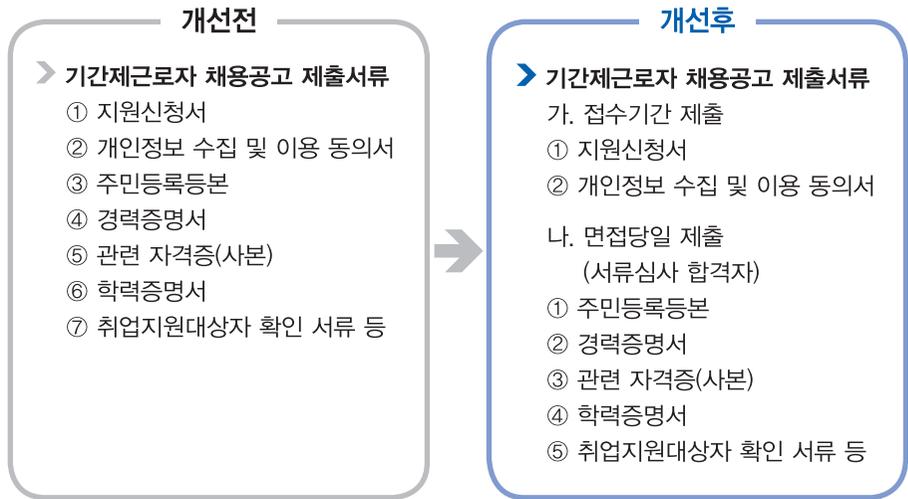
- 입찰참가자격 서류(8종)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전국 최초 행정안전부 승인)

## ② 경기도 공공기관 입찰·계약



-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망 등 전산망으로 입찰·계약 서류 확인
- ※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기관에 미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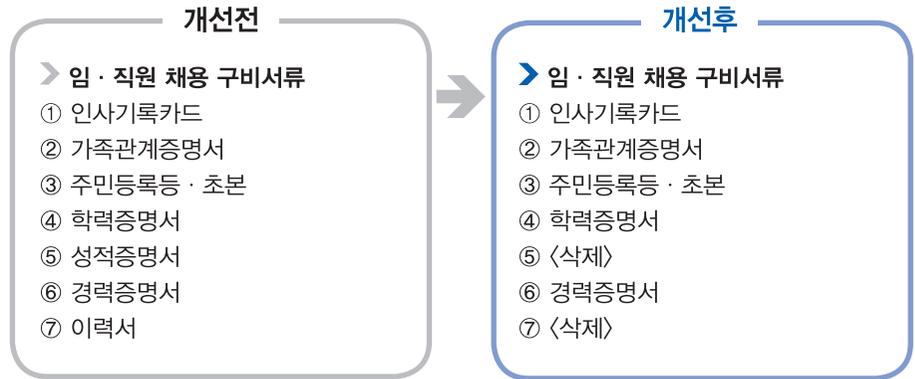
## ③ 경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 채용절차가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④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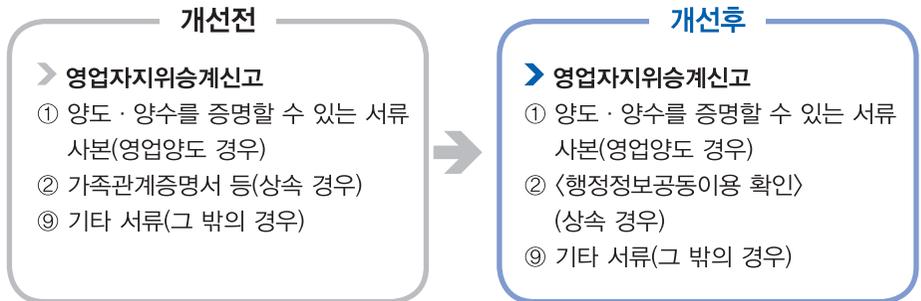


- 현실에 맞지 않는 서류 등 삭제

● 부처수용 사례

- 상위법령 개정(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신설, 절차 개정 등)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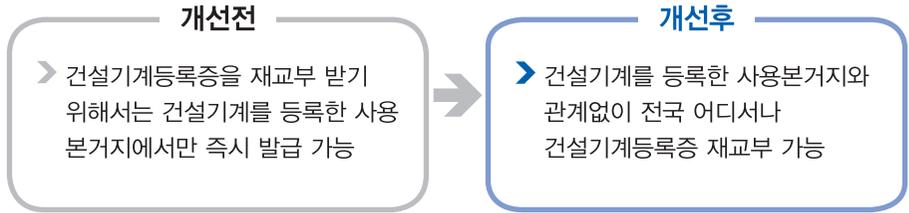
①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복지부)



②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국토부)



### ③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전국 발급 개선(국토부)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 시행(2021.8.21.)

### ④ 축산물판매시설 한시적 운영 신고절차 완화(식약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9.7.29.~9.9.)



- 민원서류 준비와 절차에 소요되는 도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도민만족 도모
- 불필요한 민원서류 보관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기대